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82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redacted]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5 및 [redacted]-2 지상에 각 연면적 500㎡ 이상인 [redacted](이하 '이 사건 [redacted]'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2002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이 사건 [redacted]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redacted]에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착오 누락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2.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락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변전소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2,389,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 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2] 제29호[1]에 의하면, [redacted]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등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장에서 제외되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표준세율"을 정하면서 각 호별로 차등과세를 하고 있을 뿐, 중과세하는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결국 중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변전소만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5)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전소의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건축물로서 '1천분의 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은 각 호에서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공장'에 해당할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따른 세액의 100분의 200이 세액으로 되는데, 이 사건 변전소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제55조 [별표 2]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변전소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

1)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7. 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에는 제28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은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여 제29호로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4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높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까지 수년에 걸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하여온 점, 원고가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이 사건 변전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 질의하였을 때 위 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변전소는 공장에서 제외되므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재산세율 및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1천분의 25의 세율을 약 7년간 적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변전소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온 점, 원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설치한 전국의 다른 변전소들의 경우에도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피고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존 해석에 반하여 2017년에 갑자기 지방세법 제111조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redacted]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제2호에서 건축물에 관한 표준세율을 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나목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등 지역에서 국토계획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등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의 세율을, 다목에서는 가목과 나목 외의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1천분의 2.5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변전소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면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이, 그렇지 않으면 1천분의 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는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종류를 규정한 위 [별표 2] 제29호 아목 본문에서는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 포함)'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 포함)'은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변전소가 이 사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포함되므로,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다가 그 밖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문언은 "지방세법 제111조" 라고 규정하여 그 중 제1항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뒤에 열거된 "시행령 제110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순차 위임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규정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아니라고 보면, 이 사건 단서 조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2]가 열거되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위 시행규칙이 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된 후부터 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단서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 이후에는 삭제되었다. 반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경우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 포함)'이 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7 [별

2)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시행규칙 제56조가 삭제되고 제55조가 포함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개정 전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10조"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이상, 이 사건 단서조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시행규칙 제56조가 제55조로 개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대한 위임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의 '중과세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표 3] 제28호 아목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3]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2]에 따라 1천분의 5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이야말로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과세"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중과세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이라고 통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과세"의 사전적 의미의 범주 및 그와 대비되는 개념인 "감면"에 관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용례에 비추어 보면, "중과세하는 경우"란 세율의 중과, 세액중과, 공제의 배제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세율 자체에 차등을 두어 달리 규정하는 경우, 높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보통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과 비교할 때 '중과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7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③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형식의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1항은 표준세율을 정한 규정이어서 중과세 규정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법이 달리 정한 '기준이 되는 세율'을 의미할 뿐이어서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여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은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제2항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경우에는 각 호별로 세액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세액을 특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 역시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비교하여 볼 때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경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중과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규정의 편의상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 반면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그 자체로 표준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같은 호 다목을 기준으로 "100분의 200"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1천분의 5"라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필요에 따라 규정형식을 달리한 것일 뿐,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같은 호 다목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기준으로 할 때 2배의 중과세율에, 제2항의 경우 위 다목을 기준으로 할 때 5배의 중과세율에 각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중과세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주거지역에 [별표 2]가 정하는 업종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 [별표 2] 제29호 본문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종, 즉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정비 · 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업(뉴스통신사업), 지역난방사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 · 배전소 포함)'의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어서 주거지역에도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다시, 위 업종 중에서도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정비 · 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 · 배전소 포함)'에 관하여는 주거지역에 연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지역에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면적 500㎡ 이상의 큰 규모일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대규모의 공장은 주거지역에 이익보다는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변전소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규모의 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존재할 경우 전자파 등 공해의 발생이나 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점에서 주거지역에서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일정 규모 이상 변전소의 건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 영 제110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포함시켜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500㎡ 이상의 변전소 설치를 억제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이 분명하다.

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는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공장'을 위 규정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은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법 제146조 · 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전소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변전소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변전소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10년까지는 이 사건 변전소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단순 과세누락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2. 1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원고가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변전소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이 1000분의 5인지 및 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위 부서로부터 '관계 법령에 의할 때 변전소는 공장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분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취지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신의 내용은 피고가 아닌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견해표명으로서, 그 내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8년경 위 질의회신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한 2011년과 시기적인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 위와 같은 질의회신을 받은 후 피고가 2010년까지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 이상인 변전소에 대하여 위 각 구청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에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위 질의회신을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별지 1

목 록

귀속연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2012	4,072,210	814,430	-	4,886,640
2013	4,028,110	805,620	-	4,833,730
2014	4,193,030	838,600	-	5,031,630
2015	5,155,930	1,031,180	-	6,187,110
2016	5,078,620	1,015,720	2,389,520	8,483,860
합계	22,527,900	4,505,550	2,389,520	29,422,9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공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 12. 3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times \frac{\text{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text{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times \frac{\text{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text{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개정 2015. 7. 24.>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1	발전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정한다)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7. 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정한다)

2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 구 지방세법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삭제 <1989.6.16>

2. 건축물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

1,600만원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

2,200만원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

3,000만원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

4,000만원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삭제 <1994.12.22>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6.12.31, 1989.6.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의2 (대도시 등)
① 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라 함은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7 (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공 장 의 종 류

2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 내지 마목 및 아목은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끝>